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88

발의연월일: 2022. 11. 4.

발 의 자 : 임이자·지성호·박대수

이종성 · 서일준 · 김형동

이 용·최영희·김용판

양금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낙동강수계(洛東江水系)의 수자원(水資源)과 오염원(汚染源)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,

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, 가뭄·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안전한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5조 제16호).

법률 제 호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6호 중 "낙동강의 수질개선을"을 "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"로, "사업"을 "사업이나 비용의 지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	제35조(기금의 용도)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용도로 운용한다.	
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그 밖에 <u>낙동강의 수질개</u>	16 <u>낙동강수계의 물관</u>
<u>선을</u> 위하여 대통령령으로	리를
정하는 <u>사업</u>	<u>사업이나 비용의 지원</u>